

영국 등 구제역 방역실태 조사결과(2)



김 창 섭 수의서기관
농림부 가축방역과

<지난 호에 이어서…>

나. 아일랜드

□ 구제역 방역 조직 및 체계

○ 영국 구제역 발생 직후 공항만 차량 소독 등 국경검역 강화, 대국민 홍보 및 생축 검사 실시

○ 구제역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Task Force를 구성·운영

- 수상이 방역회의를 주관하여 각 장관에게 방역협조 지시
- 농업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한 Task Force 구성·운영(차관주재 일일 대책회의 실시)

○ 구제역 방역은 수의조직인 NDCC, LDCCU 및 경찰(PIC)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짐

○ 방역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일부 EU에서 지원

- 살처분 등 방역에 동원된 군인·경찰 인력 가동비용은 Task Force에 파견된 소관 부서에서 지원

□ 이동제한,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

○ 아일랜드에는 구제역 진단 차폐시설이 없어 영국의 퍼브라이트에 검사를 의뢰하여 정밀진단 실시

○ 북아일랜드와 접경지역에 177개 이동 통제초소 설치·운영

- 경찰, 농업식품부, FRS(민간 농장지원기구)와 공동으로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가축·식품검색, 차량소독 실시

○ 발생당시 예찰지역을 3km에서 8km로 확대운영

○ 발생농장 가축은 총격법, 타격법, 전살법으로, 새끼는 약물주사로 살처분 하여 농장내 매물을 원칙

○ 예방 살처분 가축은 인근에 소재한 영업정지 중인 도축장에서 살처분 하여 특수차량을 이용 렌더링시설로 운송·처리

- 발생농장 살처분은 수의사·도축인부가, 도축장에서는 도부가 실시

- 살처분 가축의 두수가 적을 경우 소각처리, 매몰은 스크래피 또는 BSE 문제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음

- 야생산양은 군인들이 현장에서 총살처리

○ 발생농장의 비감수성 동물은 살처분 하지 아니함

○ 방역지역내 비발생 농장산 우유는 pH측정, 2회 저온살균 후 가공처리(감염농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렌더링 처리)

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

○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은 시장가격을 보상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발생농장과 인근농장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보상함

- 최초 발생농장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있음

○ 오염물건은 농장 내에서 농가 스스로 소각처리 하였으며, 이에 대한 보상요구(행정소송)가 있었으나 보상하지 아니함

○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험·공제제도는 검토된 바 없음

□ 소각·렌더링 시설의 활용

○ 렌더링 설비 : 9개소(민간 소유)

○ 렌더링 산물 : 정부 수의사 감독하에 마대에 담아 독일 소재 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

- 렌더링 처리를 위한 타지역 이동시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주민을 설득·추진하였음

□ 국경검역 실태(더블린공항)

○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엄격한 국경검역 실시

- 안내방송, 입간판, 홍보물 등을 통하여 입국자에 대한 홍보 및 입국자 신발 소독조 운영 등

○ EU 국가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제외한 제3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 화물에 대하여 전량 검색 실시

□ 민간방역조직 운영

○ 생산자 단체인 “Farm Relief Service”가 공사형태로 운영됨

○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결핵검진 등 방역사업 위탁실시

※ 기타 개업수의사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한 방역사업 동원 활용

다. 네덜란드

□ 가축방역 조직 및 체계

○ 농업자연관리수산부(LNV)와 보건복지부(VWS)에서 관장

- 농업자연관리수산부의 정책은 수의식품국과 환경관리국에서, 집행업무는 국립 가축 및 식육검사소(RVV, 5개 지역사무소/지소/팀)와 일반검사소(AID)에서 담당

-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공중위생국에서, 집행업무는 수의식품검사소에서 담당

○ 구제역,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은 중앙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가축방역과 관련한 지방조직은 별도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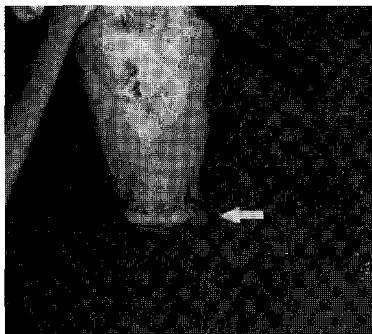
○ 긴급방역 실시에 따른 부족인력(수의사)은 정부에서 개업수의사와 계약하여 현장투입

○ 향후 재발생시 살처분 정책은 동물보호 등의 문제로 “마커백신” 접종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

□ 살처분,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

○ 예찰지역·보호지역에 EU 규정에 따라 방역대 설정, 이동통제

국내 돼지 구제역 임상증상



• 돼지 콧등에 생긴 수포



• 돼지의 유방에 생긴 수포



• 돼지 발굽사이의 수포, 궤양 및 발굽의 탈락



• 돼지 발굽사이의 수포, 궤양 및 발굽의 탈락



• 돼지 발굽사이의 수포, 궤양 및 발굽의 탈락



• 돼지의 혀에 생긴 수포가 터져 궤양형성

- 방역대는 철도, 산, 강, 숲 등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

○ 발생농장 반경 1km 가축 살처분 및 72시간 동안 전국 가축의 이동 금지, 역학조사 실시

- 긴급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, EU 승인을 받아 수의과 학생까지 동원하여 예방접종 실시

○ 농장별 임상검사(예찰) 및 혈청검사는 EU 규정에 의거 실시

- 임상검사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임상증상이 확실히 없을 경우 해당 방문 수의사의 타 농장 방문을 허용하고,

- 의심이 가거나 임상증상을 발견한 때에는

방문 수의사에 대해 72시간 다른 농장의 방문을 금지

○ 발생농장의 오염물건중 소독처리가 되지 않는 건초, 사료 등은 농장내 소각처리

- 발생농장내 분뇨(슬러리)는 약품투입 등 산도를 맞추어 살포처리

○ 우유는 렌더링 후 소각하고, 비발생농장의 우유는 pH측정, 2회 저온살균 후 유통

○ 발생농장 반경 1km는 농장에서 살처분 하여 렌더링 시설로 운반처리후 다시 소각시설로 운송, 소각처리

- 살처분은 정부 수의사와 도축장 도부가 동원됨

- 대가축은 전살기를 이용하고 어린 가축은 약물주사 처리

○ 발생농장 반경 1~2km는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개소의 지정도축장으로 운반하여 살처분 후 렌더링 시설로 운송 처리

- '97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 살처분 가축은 네덜란드 내의 렌더링 시설에서 처리하고, 예방 살처분 가축은 독일, 벨기움의 렌더링 시설에서 처리(비용 전액 중앙정부 부담)

□ 살처분 가축 등의 렌더링 처리

○ 네덜란드는 육지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질학적 특성상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커 매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

- 소각의 경우도 환경단체의 반대와 EU 규정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

○ 살처분 가축 : '97 돼지콜레라 11백만두, '01 구제역 388천두

○ 렌더링 시설(2개소) : 처리능력 1,500톤/일

- 공사성격의 민간기구에서 운영하지만 정부에서 감독과 예산을 지원

- 회사별로 특수 운송차량(30~40대)을 소유

○ 운송시 봉인 및 누수방지 장치를 하고 렌더링 시설이 발생농장에서 2시간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에 문제가 없었음

※ '97~'98 돼지콜레라 발생시 벨기에, 독일 렌더링 시설 이용

- 동 시설이 국내 운송시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곳에 위치하였고,

- 감염가축이 아닌 예방 살처분 가축만 처리하였기 때문에 운반과 처리에 문제가 없었음

- 독일, 벨기에 국가간 사전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었음

□ 살처분 보상 등 방역비 지원

○ 살처분 가축의 보상은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지만 보상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의 100%를 보상

○ 중축은 고시가격으로 보상하고 발생농장에서 소각처리된 오염물건은 보상 요구가 있었으나 보상을 하지 않았음

- 오염물건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 EU에서 규정을 마련중임

○ 휴업보상은 농가의 요구가 있었으나 손실부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

- 보상보험이 있으나 수가가 비싸 농가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음

* 도축장 폐쇄 및 살처분 가축의 도축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도축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, 육가공 시설의 가공중지에 따른 손실액에 대하여 보전하여 줌

○ EU에서 네덜란드 정부에 방역비의 일부(60% 정도)를 지원

○ 동원된 군·경찰 등의 운영비용 등은 수상이 긴급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각 부처별로 예산을 분담하고, 긴급재난이 아닐 경우 농업자연관리수산부에서 부담

○ 렌더링 처리비용의 분담

- 정부 균질대상 질병으로 살처분 한 가축 : 전액 국가 부담

- 일반질환, 수해·화재 등으로 죽은 가축 : 정부 95%, 농가 5%(환경오염방지에 농가의 협조유도 목적)

□ 민간방역기구(CD) 운영

○ 농가대표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하여 정부와 공동방역사업 실시

- 정부의 가축방역정책 결정에도 참여

○ 운영비의 50%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50%는 단체가 분담

□ Ekro 도축장 및 Oukro 원피가공장 위생·방역 관리실태

① Ekro 도축장(아펠담 소재, 소 도축장)

○ 구제역 발생시 방역관리

- 방역지역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(살처분) 처리

- 도축규모는 평시 일 1,500두였고, 구제역 발생시에는 2,000두 처리

- 도축시 발생한 혈액은 전량 렌더링 처리 후 소각

- 도축인부는 도축 후 위생복 폐기, 목욕·소독한 후 퇴근조치

- 당초 Ekro 도축장 이용 계열농가는 다른 지역 계열화 도축장(2개소)로 출하선을 변경 조치

* 예방접종한 가축은 출하전 농장에서 예방접종전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접종후 14일이 지나 출하되었기 때문에 도축라인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지 아니하였음

- 살처분 도축은 도축라인만 이용(일부는 지육냉장시설 이용)하였고 가공라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조치를 하였음

○ 위생·방역관리

- 출하단계 및 도축과정에서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시스템 도입·운영하고 있음

- HACCP를 5년전부터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제규정으로 운영

② Oukro 원피가공장

○ Ekro도축장 및 계열도축장(2개소) 등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원피를 주원료로 가공함

- 원피는 시간당 300매 정도를 가공처리하고 있음

○ 염장시 네덜란드산 암염 및 2% 중탄산나트륨으로 처리하여 30일이상 저온냉장실에서 염지한 후 출고

- 중량, 크기 등 품질별로 3등급으로 구분, 1~2등급만 동시설에서 가공처리하고 3등급은 가공 없이 다른 지역에 판매

□ 로테르담 동물검역소

○ 애완동물(조류 포함)사와 대동물사 계류시설로 구분 운영

○ 네덜란드는 가축 수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계류 검역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

4. 향후 조치계획

□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및 SOP 반영 등 제도개선

○ 국경검역 방식을 리스크 평가에 의거 발생국 출발 여행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세관 및 공·항만 관계부서 공조체계 구축

○ 방역원칙은 OIE 등 국제규정에 준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SOP의 개선

- 오염물건 폐기 및 보상, 농장예찰 시스템, 수매가축의 처리 등

- 살처분 가축의 처리(도축장, 렌더링 시설 계약활용 및 지원)

* 방역조직 및 기능은 향후 조직 개편시 참고

□ 조사기간중 입수한 국별 구제역 SOP 등 방역규정 자료는 번역하여 시·도, 대학, 검역원 등 관계기관 배포 활용 양동